

우리가 주인

2004년 1월 12일 (월)

노동조합추천 사외이사 진출

KT 노동조합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강세종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전화 031-727-4820-4854/전송 02-750-5404/홈페이지 www.kttu.or.kr /편집디자인 갈컴(02-2272-7114)

사외이사진출이 고용보장의 안전핀

노동조합추천 사외이사 진출은 종사원의 의견개진과 고용보장의 창구가 될 것



97년부터 지금까지 회사는 11번의 고용보장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종사원은 96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었다.

<표참조>

이는 회사의 고용보장 약속이 단기간의 효과는 있을지도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회사의 임원은 상시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사장 또한 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 위반사례가 거듭될수록 노동조합과 회사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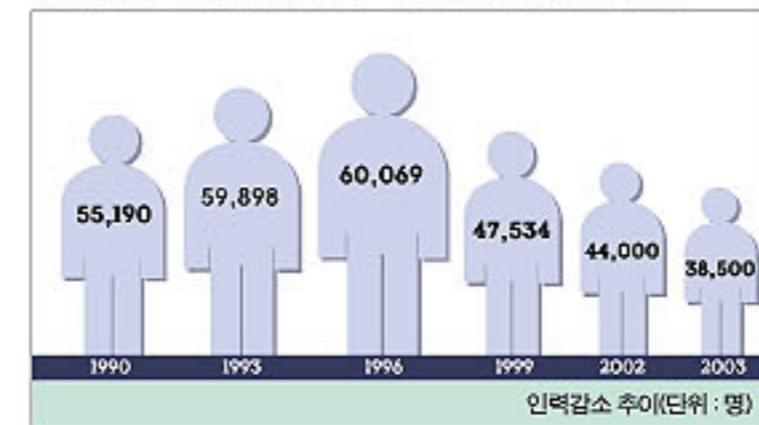
특히 KT는 경영권을 장악한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 경영진의 책임성이 떨어진다. 어차피 질책봐야 임기를 마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단기적인 경영평가에 맞추기 위해 회사의 업무환경과 종사원의 고충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정보력 부족으로 인해 회사의 고용문제 등에 대해 대처하기 어렵다. 이는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다. 결국 회사의 인원감축이나 분리분사 등 발표가 이뤄진 다음에야 대응할 수밖에 없

고 이와 같은 대응은 물리력을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는 21세기에는 지양해야 한다. 물리력으로 겨루는 노사관계는 서로를 적대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든 노사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정책입안에서부터 동참해 종사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진출이다. 종사원의 고용과 권리가 보장해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는 것은 노사간 충돌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돼 신뢰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철경이 될 것이다.



외국의 경영참가사례 “노사관계개선” 효과만점

독일의 폴크스바겐

자동차 강국인 독일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기업가치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자동차 생산대수로 세계 5위자 독일 최대 자동차회사인 폴크스바겐그룹은 지난해 충부가가치 생산액(매출-비용) 197억유로(아우디와 기타 자회사 포함, 약 27조6천억원) 가운데, 임금과 복지비 등으로 종업원들에게 나눠준 둘이 67.4%인 133억유로(약 18조6천억원)에 이른다.

주주배당으로는 고작 2.5%(5억유로), 세금과 공과금이 8%(15억7천만유로), 채권자들에게 준 이자가 11.5%(22억7천만유로)를 차지한다. 기업 성과의 절대비중이 종업원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폴크스바겐에서는 노동이 사용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경영은 창의적이고 속련된 노동의 개발이고, 노동은 곧 경영이

다. 경제적 성과를 종업원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도 성과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종업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독일 회사들의 노사관계는 독특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놓고서는 기업별이 아니라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상하고, 기업과 사업장 단위에서는 직장평의회라는 또 다른 노사공동기구가 있다.

폴크스바겐 종업원들은 독일 금속노조의 조합원이면서, 또 각 직장평의회 회원이다. 직장평의회는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 직무조정이나 작업공정개선 등에 대한 협의권, 또 신규투자라는 사업장 이전과 같은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의 사결정권한까지 있다. 공동의사결정은 우리나라의 이사회에 해당하는 경영감독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데, 독일은 지난 1972년 현법과 주식회사법을 개정해 종업원 2만명 이상 주식회사는 전체 이사의 절반을 종업원 대표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 NTT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정보 협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에서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 노동자들이 고용자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 8일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직접 법안개요를 발표한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새 법안을 2005년부터 직원 1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08년에는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

일본 일본의 NTT는 ▲정보통신시장에 대한 사업전략 ▲신사업 진출 사회적 요청에 대한 대응 ▲고용확보 등 경영전반에 대해 경영진과 협의하는 경영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만 - 중화통신

대만 대만의 중화텔레콤은 15명의 이사중 노동조합이 이사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이는 대만이 기간통신 산업을 민영화를 발표하자 노동조합이 국회에 청원활동을 펼쳐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노대통령

“노동조합, 경영참여해야”

2003년 정부관료들의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발언들

3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종업원지주제 등으로 노동자들이 간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사 공동의 이해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월 13일

한국노사관계학회(회장 박원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연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노사관계 갈등 해소의 방안으로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6월 20일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장 박태주)는 비서관·행정 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과제 설명회 보고자료에서 “사용자측의 인사·경영과 정부정책에 관한 노조의 청보요구나, 노사 및 노정협의회와 상호이해를 위한 노조의 경영과 정책 참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6월 27일

한국일보미디어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 주장에 대한 의견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는 수준에서 제한적 경영참여를 보장해야 한다’(50.6%), ‘투명경영을 위해 원색하게 보장해야 한다’(22.8%) 등 진보적 견해가 많았다. 기업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월권행위로 용납불가’ 응답은 20.0%에 머물렀다.

7월 1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체하는 대신 사용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원-원 관계’ 형성이 유법 일부 국가 노사모델의 핵심”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도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 모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언.

9월 1일

노사정위원회는 9월부터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에 관한 사항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닫힌문을 열어 희망을 모으자!

조합원 여러분, 주권을 위임해주십시오!

민영 KT에서 조합원(직원)의 위상은 이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KT의 3요소인 주주, 고객, 직원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주식 분포상 주요 주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진은 주주에 의해 고용된 계약직일 뿐입니다.



